

[별지 제8호 서식] (규칙 제15조제6항 관련) <개정 2025. 1. 16.>

공개장소 연설·대담용 표지 교부신청서

구 분		신청수량	종 류	규모(규격)	비 고
자 동 차					
확성 장치	자동차 부착용			■정격출력: ■음압수준:	
	휴대용			■정격출력:	
녹 음 기					
녹 화 기					

년 월 일 실시하는 ○○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공개장소 연설·대담용 자동차·확성장치·녹음기·녹화기의 표지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[소환청구인대표자 ○○○ 인
주민소환투표대상자 ○○○ 인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- 주: 1. 자동차의 종류란에는 버스, 소형버스, 트럭, 승용차 등으로 구분하여 적고, 자동차의 규모(규격)란에는 승차인원, 톤수 등을 적습니다.
2. 확성장치의 표지를 신청하는 경우 스피커의 음압수준(자동차 부착용에 한함) 및 정격출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등(사본포함)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3. 확성장치의 규격은 “자동차 부착용”의 경우 스피커의 정격출력 및 음압수준을, “휴대용”의 경우 스피커의 정격출력을 기재하고, 각각의 비교란에는 시험성적서등에 기재된 스피커의 모델명을 기재합니다.
4. 녹화기의 종류는 점보트론, 멀티비전 등으로 구분하고 전체화면의 크기(규격)를 ‘m’로 표시합니다.
5. 공개장소 연설·대담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·녹음기·녹화기를 부착한 자동차의 경우 각각의 비교란에 그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.